

2015년 단체협약 갱신(안)

구	개정(안)	비고
<p>제3조(조합원의 범위) ①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(이하 "조합원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팀장 이상의 직책에 보직된 직원(<u>Senior Manager 포함</u>, 파트장 제외) 2. <u>소장</u> 3. 청원경찰 4. 안보, 군 및 경호통신업무 담당직원 5. 인사, 노무, 회계·경리(단순한 요금수납 관리업무요원 제외), 감사 및 비상계획업무 담당직원 6.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 7. <u>상무보급 이상의 비서·승용차 운전원</u> 8.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로써 정하는 직원 <p>② 조합원이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업무 종사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해당업무 종료 시 원 소속 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을 자동 회복한다.</p>	<p>1. 팀장 이상의 직책에 보직된 직원(파트장 제외)</p> <p>2. 청원경찰</p> <p>3. 안보, 군 및 경호통신업무 담당직원</p> <p>4. 인사, 노무, 회계·경리(단순한 요금수납 관리업무요원 제외), 감사 및 비상계획업무 담당직원</p> <p>5.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</p> <p>6.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로써 정하는 직원</p>	<p>Senior Manager 삭제 2호 삭제</p> <p>2호 변경 3호 변경</p> <p>4호 변경 5호 변경 7호 삭제</p> <p>6호 변경</p>
<p>제26조(휴직)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사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. 2.. 	<p>제26조(휴직)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사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</u> <u>2.</u> 	

<p>3.</p> <p>③. 제1항 각호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. 3. 	<p><u>3.</u></p> <p><u>4. 배우자가 해외파견, 연수, 근무 등으로 해외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로 본인이 희망시</u></p> <p>③. 제1항 각호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. 3. <p><u>4. 휴직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무급으로 한다.</u></p>	<p>4호 신설</p> <p>4호 신설</p>
<p>제26조의3(창업지원휴직) 회사는 <u>명예퇴직 자격이</u> 되는 조합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3년 6개월의 창업지원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최초 1년간은 월 기준급과 역량급을 지급한다.</p>	<p>제26조의3(창업지원휴직) 회사는 <u>근속20년 이상</u> 근무한 조합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3년 6개월의 창업지원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최초 1년간은 월 기준급과 역량급을 지급한다.</p> <p>제26조의 5(안식년 의무휴직) 회사는 <u>근속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하여 의무휴직을 부여한다.</u></p> <p><u>기간은 10년 이상근속은 1월, 20년이상 근속은 2월의 휴직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한다.</u></p>	<p>문구수정</p> <p>안식년제 삽입</p>
<p>제27조(육아 및 불임휴직) ① 회사는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(입양자녀 포함)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.</p>	<p>제27조(육아 및 불임휴직) ① 회사는 <u>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</u> 자녀 (입양자녀 포함)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.</p>	<p>만8세 초등2학년 변경</p>
<p>제31조(명예퇴직) ① 회사는 <u>20년 이상</u> 근속한 조합원이 질병 및</p>	<p>제31조(희망퇴직) ① 회사는 <u>임금피크제 적용에 도달한 직원이</u></p>	<p>선택가능</p>

<p><u>공상자 이거나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시킬 수 있다.</u> 단,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분기별</u> 시행한다.</p>	<p>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시킬 수 있다. 단,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매월</u> 시행한다.</p> <p>② 중대한 공상 및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, 회사는 심사를 통해 퇴직시킬 수 있으며, 이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.</p>	<p><u>제3장 인사 및 고용안정, 교육</u> <u>제2절 고용안정</u></p> <p><u>제36조(정년 및 재고용)</u></p> <p>① <u>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</u></p> <p>② <u>직원은 정년이 도래하는 날의 생년월일 익월 1일자에 당연 퇴직한다.</u></p> <p>③ <u>정년 퇴직후 재 채용시 회사는 심사절차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을 조합에 제공한다.</u></p> <p>④ <u>지원자격, 선발규모, 선발방식, 채용조건 등은 조합과 합의한다</u></p> <p><u>제37조(정리해고)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감원코자 할 때에는 최대한 자구책을 강구한 후 그 사유를 최소한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거쳐 결정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정리해고의 필요성과 긴박성</u> 2. <u>감원인원의 수, 범위</u> 3. <u>정리기준과 적용방법 및 해당자</u> 4. <u>정리해고 해당자에 대한 보호조건 (해고예고제, 해고에 대한 보상,</u>
--	---	---

	<p><u>재고용의 특권 등) 등.</u> <u>다만, 감원시 우선순위는 연령,</u> <u>근속년수, 부양가족수 등 상황을</u> <u>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자, 회사</u> <u>중징계자 (업무상 과실 제외), 조합</u> <u>탈퇴자, 조합징계자, 비조합원</u> <u>순으로 한다.</u></p>	
제2절(교육)	<u>제3절(교육)</u>	절변경
<p>제40조(부당공제의 금지)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호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조세공과금 2. 노동 조합비 3. 건강 보험료 4. 국민 연금 5. 개인 연금(연금저축 포함) 6. 고용 보험료 7. 주택자금 대부금(생활안정 대부금 포함) 및 상환 학자금 대부금 8. 조합원이 공제를 위임한 사항 9. 기타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 	<p><u>7. 긴급가계자금 포함</u></p>	문구추가
제47조(근속기간)	<p>제47조(근속기간)</p> <p>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한다</p> <p><u>10. 26조 5항에 의한 안식년 기간</u></p>	조항추가
<p>제49조(명예퇴직금) ① 회사는 제31조에 의거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월 기준급과 역량급을 합한 금액에 제2항에 의거 산출한 잔여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명예 퇴직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② 잔여월수의 산출방법은</p>	<p>제49조(희망퇴직금) ① 회사는 제31조①항에 의한 희망퇴직자는 월 기준급과 역량급을 합한 금액에 제2항에 의거 산출한 잔여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희망 퇴직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② 잔여월수의 산출방법은 퇴직</p>	잔여기간

<p>퇴직 익월부터 정년퇴직일 5년 이내는 잔여월수 매 2월당 1월로 계산하고, <u>5년을 초과한 10년까지는 5년까지의 잔여월수</u> 에다가 <u>5년을 초과하는 잔여월수</u> 매 4월당 1월을 가산하여 산출한다. 다만, 잔여월수 계산 시 4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.</p>	<p><u>익월 부터 정년퇴직일 5년 이내는 잔여월수 매 2월당 1월로 계산한다.</u> <u>③ 제31조 ②항에 의한 퇴직자는 월 기준급과 역량급을 합한 금액의 24개월분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한다.</u></p>	<p>5년이내로 변경</p>
<p>제55조(근무시간)</p>	<p><u>제55조(근무시간)</u> <u>③PC-OFF제로 야간근로 미신청자에 한하여 매 20:00에 PC 전산망을 차단한다</u></p>	<p>PC-OFF제 도입</p>
<p>제61조(유급휴일) 회사는 조합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정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</p>	<p><u>제61조(유급휴일) 회사는 조합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정한 휴일, 노동조합창립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.</u></p>	<p>휴일 추가</p>
<p>제62조(휴가)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</p> <p>1의2(연차휴가의 사용촉진)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.</p>	<p>1의2(연차휴가의 사용촉진)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별 연차휴가의 사용을 <u>70%를 촉진하고 미 사용휴가 30%에 대하여는 보상한다.</u></p>	<p>자율권 보장</p>
<p>제81조(자녀 학비 지원) 회사는 조합원이 순직한 경우와 공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취학 자녀에게 일반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의 학비를 지원한다. 지원기간은 당해 조합원이 정년 퇴직 했을 시점까지로 한다.</p>	<p><u>제81조(자녀 학비 지원) 회사는 조합원이 순직한 경우와 공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취학 자녀에게 일반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의 학비를 지원한다. 지원기간은 당해 조합원이 정년 퇴직 했을 시점까지로 한다. 단, 대학학자금의 경우 2014.6.1 이전에 순직 또는</u></p>	<p>2014.4.8 대학학자금 폐지(고등 학자금)</p>

	<p>공상 퇴직한 조합원에 한하여 지원한다</p> <p>제87조(복지후생시설)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사택, 복지센터, 구내식당, 이(미)용실, 건강관리실, 욕실, 세탁실 등의 복지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한다.</p> <p>제107조(협정근무자)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작업에 종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통신소통에 필요한 최소인원 (경비·기계설비·전력실 및 <u>과금담당요원</u> 등) 2.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 결정한 인원 	유지) 신협, 구판장 삭제
	<p>1. 통신소통에 필요한 최소인원 (경비·기계설비·전력실 등)</p> <p>12장 정도경영 및 사회적 책무</p> <p>제112조(정도경영)</p> <p><u>① 회사와 조합은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경영자립 기반 확립과 외부에 대한 경영상의 자율성을 확보함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, 이를 위해 상호간에 신의,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노력한다.</u></p> <p><u>② 회사는 정도경영이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조합에게 경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</u></p> <p>제113조(이사회 의견제시 등)</p> <p><u>① 회사는 조합이 회사경영 전반에</u></p>	과금담당 삭제 신설

걸쳐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②조합은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련한 임원회의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114조(사회적 책무) ①회사는 기간통신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.
②회사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③회사는 지역사회 발전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공동으로 노력하며 기금확보 및 적립, 집행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.